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16
------------	-------

발의연월일 : 2019. 6. 17.

발의자 : 최운열 · 심기준 · 고용진

강창일 · 박완주 · 김병기

채이배 · 윤관석 · 송갑석

김종민 · 기동민 · 유동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0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제6조제1호 및 제1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24조의3을”을 “제24조의4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p> <p>공단은 제6조제1호 및 제1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p>

	<p><u>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u></p>
<u>제24조의2(업무의 위탁) (생략)</u>	<u>제24조의3(업무의 위탁)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u>
<u>제24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생략)</u>	<u>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u>
제28조(벌칙) ① (생략) ② <u>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4조의4를 ----- ----- -----.</u>